

제3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우리회사의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상법 제542조의 4 및 정관 2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- 아 래 -

1. 일시 : 2026년 3월 26일(목) 오전9시

2. 장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(여의도동)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 회의실

3. 회의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1호 의안 : 제31기(2025.1.1~2025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
※ 현금배당 예정내용 :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20원

제2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 (첨부1 참조)

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첨부2 참조)

제3-1호 의안 : 비상근 사외이사 최준환 선임의 건 (재선임)

제3-2호 의안 : 상근 사내이사 신경식 선임의 건 (재선임)

제3-3호 의안 : 기타비상무이사 이상호 선임의 건 (재선임)

제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(12억원, 전년동일)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와 당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(주)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, 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직접행사 :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

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인감증명서, 대리인신분증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(<https://dart.fss.or.kr>) 의 공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1일

주식회사 브리지텍
대표이사 신 경 식

직인
생략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	개정이유
제 13 조(주식의 소각) <u>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</u>	제 13 조(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) <u>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.</u> <u>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.</u> <u>1.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</u> <u>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</u> <u>3.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</u> <u>4. 상법 제 360 조의 2 제 2 항, 제 360 조의 15 제 2 항, 제 523 조제 3 호 등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</u> <u>5.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</u>	-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사유 규정을 반영함.
제 25 조 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,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	제 25 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) <u>① (현행과 같음)</u> <u>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 542 조의 14 제 1 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u>	- 상법 제542조의14, 제 542조의15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
제 31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 (생략)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<u>서면(위임장)</u>을 제출하여야 한다.	제 31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<u>서면 또는 전자문서를</u> 제출하여야 한다.	-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 반영
제 34 조 (이사의 수)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7 인 이내로 한다.	제 34 조 (이사의 수)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7 인 이내로 하고, <u>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 분의 1 이상으로 하되,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-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내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.

현행	개정(안)	개정이유
제 38 조 (이사의 의무)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<u>회사</u>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략) <제 2 항 신설, 기존 제 2 항~4 항 항번호 변경>	제 38 조 (이사의 의무)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<u>회사 및 주주</u>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 <u>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</u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	- 이 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함.
제 39 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 ① (생략) ② ~ ④ (항 변경, 생략) <제 2 항 제 3 항 신설, 기존 제 2 항~4 항 항번호 변경>	제 39 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의 보수총액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③ <u>제 2 항의 해당 사업연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총액이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가장 최근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</u> ④ ~ ⑥(항 변경, 현행과 같음)	- 이사보수한도 승인 절차 개정
제 39 조의 2 (이사의 책임감경)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다)의 6 배(<u>사외이사</u> 는 3 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,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 39 조의 2 (이사의 책임감경)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다)의 6 배(<u>독립이사</u> 는 3 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,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-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.
제 46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<u>사외이사</u> 이어야 한다. ③ (생략)	제 46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<u>독립이사</u> 이어야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	-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.
부칙 1~19 (생략)	부칙 1~19 (현행과 같음) 20. 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6 년 3 월 26 일 부터 시행한다. 제 2 조(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) 제 25 조, 제 31 조의 개정규정은 202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. 제 3 조(독립이사에 관한 적용) ① 제 34 조, 제 39 조의 2, 제 46 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	

첨부2)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제3-1호 의안 : 사외이사 최준환 선임의 건

성명	추천인	주요약력	기 타	비고
최준환	이사회	- 1963년생 - 1980~1987 (주)제일은행 - 1987~2017 (주)신한은행 및 (주)신한금융지주회사 - 2018~2020 (주)신한DS - 2023 ~ 브리지텍 사외이사	- 최대주주와의 관계 : 관계없음 - 당사와의 거래내역 : 거래내역 없음	재선임 (3년)

제3-2호 의안 : 사내이사 신경식 선임의 건

성명	추천인	주요약력	기 타	비고
신경식	이사회	- 1969년생 - 2000년 ~ 현재 브리지텍 재직 - 2020년 ~ 현재 브리지텍 대표이사	- 최대주주와의 관계 : 관계없음 - 당사와의 거래내역 : 거래내역 없음	재선임 (3년)

제3-3호 의안 : 기타비상무이사 이상호 선임의 건

성명	추천인	주요약력	기 타	비고
이상호	이사회	- 1960년생 - 1995년 삼우티비에스 설립 (현. 브리지텍)~ 현재	- 최대주주와의 관계 : 본인 - 당사와의 거래내역 : 거래내역 없음	재선임 (3년)